

## 담배사업자의 흡연피해로 인한 보상과 책임

The compensa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tobacco industry for smoking related harms



배금자 변호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건의 담배사업자에 대한 흡연피해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7년째 진행되어온 담배소송이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한국에서 담배사업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담배인삼공사였으며 이를 민영화하여 현재 (주)KT&G(구.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를 독점 제조 판매해오고 있다. 따라서 흡연피해자가 배상책임을 추궁할 때 이 두 사업자가 공동피고가 된다. 한국의 담배소송에서의 쟁점은 1) 담배사업자의 고의, 과실 위법성 입증, 2)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입증, 3) 담배갑 경고문구로 인한 면책 여부 및 니코틴 중독성의 문제이다. 담배사업자들은 흡연피해 및 중독성에 대한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과거 이를 은폐하거나 거짓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담배갑 경고문구나 담배규제에 대해 불충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배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경고하고, 담배의 위험감소를 위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과실책임이 있으며, 흡연피해 은폐 및 정보비제공에 대한 고의책임도 있다. 이를 볼 때, 현재 진행중인 담배소송에서 피해자들은 과거 무지한 기간에 오랫동안 흡연해왔으므로 담배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데 법적 인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 1. 담배사업자의 책임

#### 1) 담배소송현황

담배사업자(대한민국정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승계한 주식회사 KT&G, 이하 '담배사업자'라 함)에 대한 흡연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른바, 담배소송)이 한국에서는 현재 3건이

진행되고 있다. 1999년 9월에 제기된 흡연피해자 1명과 가족이 제기한 사건(99가합 77378호)과 1999년 12월에 제기된 흡연피해자 6명과 가족, 합계 31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사건(99가합 104973호), 2005년 5월에 제기한 흡연피해자 유족2명이 제기한 사건(2005가합 73599호)이 있다.<sup>1)</sup>

위 3건의 소송 원고들은 30년 이상 흡연을 계

1) 2005년 5월에 제기한 사건은 폐암에 걸린 경찰공무원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의 폐암 유발 원인이 '흡연'이라고 하여 기각되자,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망인의 폐암 원인이 '흡연'이라고 하여 유

속해오다가 폐암에 걸린 피해자 본인과 그 유족들이다.<sup>2)</sup> 피해자 본인의 직업은 1차소송에서는 외항선원이고, 2차소송에서는 어부, 농부, 목축업자, 식당업자, 상인, 외판원이고, 3차소송에서는 경찰공무원이다. 모두 20세를 전후, 1960년대 전후에 흡연을 시작하여 군대에 들어가서 하루한 갑 이상 골초가 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

## 2) 담배사업자

한국에서 담배사업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인 한국담배인삼공사였다. 대한민국정부는 담배를 국가전매사업으로 하여 1945년부터 1989년 3월까지 독점 제조 판매를 하였고, 1989년 4월부터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국산담배의 독점적 제조 및 판매권을 넘겨받아 담배를 독점 제조 판매해왔다. 그 후 한국담배인삼공사는 2002. 12. 27. 자로 완전 민영화되었고 현재 (주)KT&G로 상호변경이 되었다. (주)KT&G는 과거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저지른 불법행위 책임을 포괄승계한 법인이 되었고, 대한민국정부는 과거 사경제 활동으로 담배제조판매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을 여전히 보유한다.

따라서 국산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린 흡연피해자들이 담배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추궁할 때 정부와 공기업(담배인삼공사)을 포괄 승계한 민간기업(주식회사 KT&G)이 공동피고가 된다.

담배인삼공사의 행위에 따른 책임은 주식회사 KT&G의 책임으로 승계되었으므로 담배인삼공사의 행위는 KT&G 책임으로 되는 행위로 평가된다.

## 2. 한국담배소송의 배경

### 1) 제조물책임

한국의 담배소송에서 담배사업자에 대해 흡연피해자의 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법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중 제조물책임이다. 제조물책임이란 일반적으로 “결합있는 제조물을 통해 그 제조물의 이용자·소비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 이해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2000. 1. 12. 발효, 2002. 7.1. 시행)은 “동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그 전에 담배를 피워 암에 유발된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담배소송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오래 전부터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책임규정을 적용하여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

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면 제조회사의 과실이 추정되고 제조회사가 과실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결함과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손해발생의 개연성만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담배소송에서 담배사업자에 대한 흡연피해자의 책임추궁의 주된 법리는 제조물책임이 된다.

#### (1)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 책임에서 결함의 판단기준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제조물의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여기서 “안전성”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내포되어 있는 부품의 안전성 및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위험과 관련 있는 안전성을 말한다. 제조자가 의도한 설계(생산계획)나 방식에서 일반적인 소비자가 예견하는 안전성의 수준을 넘어서 각종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결함이 인정된다. 또한 제조자의 위험성의 제거의무는 제조과정을 거쳐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부과되는데, 유통과정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단순하게 알릴 ‘지시경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2) 담배는 결합있는 제조물에 해당

담배는 4000여종의 발암 및 독성화학물질, 이 중에서 20종의 A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흡연은 폐암, 후두암, 식도암, 방광암, 췌장암 등을 비롯하여 심장병,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각종 질병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폐암의 경우 90~95%가 흡연이 원인이 되어 발병이 된다. 그리고 흡연자는 평균수명이 20~25년 감축하며 흡연자의 절반이 한창 일할 중년의 나이에 사망한다.

또한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성분은 헤로인과 코카인 수준의 강력한 만성 중독성을 일으키는 마약이다. 대마초는 담배의 니코틴에 비하면 거의 중독성도 없는데 불법화한 반면, 담배의 니코틴은 각국이 금하는 강력한 중독성 마약수준인데도 합법화하고 있는 유일한 제품이다. 흡연을 계속하게 되면 니코틴에 강한 내성이 생기고, 금연을 하면 니코틴의 금단현상으로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이 커지고 자발적 의지로 금연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담배는 흡연자에게 장기적으로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켜 신체상 손해를 끼치며, 나아가 흡연자의 수명을 단축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므로, 이는 ‘결합있는 제조물’에 해당한다.

#### 2) 해로움과 중독성을 인지한 담배사업자들

담배사업자들은 담배가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과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오

족보상을 기각하여, 폐암사망에 대한 책임을 담배사업자에게 묻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다.

2) 소제기 후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자들인 원고의 절반이 사망하였으며, 사망한 원고의 경우 그 가족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 중에 있다.

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담배사업자 대한민국정부는 1945년 재무부 재무국에 전매연구소를 두었고, 1953년 전매청에 연초제조기술연구소를, 그후 1961년 전매청 중앙전매기술연구소, 1978년 한국연초연구소, 1981년 한국인삼연초연구소를 두고 담배를 연구하고 신제품을 개발하여 왔다. 담배인삼공사도 한국인삼연초연구소를 통해 연구를 하다가 1993년 한국인삼연초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그후 담배인삼공사를 승계한 KT&G에 의해 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이 개편되어 기존의 모든 담배연구자료를 KT&G중앙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다.

위 연구소에는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 기술자들이 배치되어 담배의 성분을 분석해 왔다. 그 연구소를 운영한 담배사업자들은 자체 연구를 통해서나 해외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통하여서도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게 되었다<sup>3)</sup>.

### 3) 불충분한 경고

담배사업자 대한민국은 흡연의 구체적 위험을 알고 있었으면서 1975년 6월 1일 WHO로부터 권고를 받은 후 마지못해 1976년 1월 1일부터 흡연경고문구를 담배갑에 삽입하였다. 그런데 그 경고문구는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는 것이어서, 이것은 흡연이 폐암 등을

유발한다는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라 볼 수 없다.

담배사업자 대한민국은 1989년 12월 17일부터 경고문구를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담배갑 옆면에 표기)” 강화하였다.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사실 1989년도부터라 할 수 있지만 담배갑에 조그만한 글씨로 새긴 이 경고문구 하나만으로 국가가 소비자에게 담배의 위험성 경고를 충분하게 했다고 할 수 없다.

### 4) 불충분한 담배규제

담배사업자 대한민국정부는 1970년대 무렵부터 흡연의 구체적 위험을 알고 있었으면서 흡연규제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1986. 5. 10. 공중위생법을 제정하여 “흡연구역 지정”을 한 것이 최초의 흡연구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흡연구역지정만 하였을 뿐이지 단속도 계몽도 하지 않았으며, 흡연구역 지정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담배사업자 대한민국정부는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면 성인보다 위험이 더욱 높을사실을 알면서도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1997년 3월 7일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되

지 않고 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은 1995. 1. 5.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되기까지 거의 하지 않았다.

담배사업자 한국인삼공사도 1995년 1월 5일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된 후에 담배 한갑당 2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여 그 돈으로 금연운동에 일부 사용하고 있을 뿐, 그 전에는 금연운동을 위해 한푼의 돈도 지원하지 않았다.

### 5) 은폐 및 거짓 정보전달 행위

담배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연구소를 통하여 연구한 결과를 한번도 국민에게 발표한 적이 없다. 담배의 유독성과 발암물질, 중독성에 대해 성분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거나 설명을 한 적도 없다.

1986년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성분, 함량, 구조 등 그 중요한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담배사업자 대한민국은 담배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법에 정해진 대로, 담배의 구체적 유해성분을 알린다는가 소비자의 신체에 안전한 기준을 설정한다는가 담배의 유해성분을 제거하거나 줄이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담배사업자 담배인삼공사 또한 담배의 해로운 성분, 중독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담배의 안전 기준을 전혀 설정하지 않았다. 담배사업자 담배인삼공사는 소극적으로 해로움을 묵비한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고의적으로 ‘속이는’ 행위로 나아갔다. 담배사업자 담배인삼공사는 1989년부터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부착해야 하게 되자, 이것이 담배 소비량을 감소시킬 것을 두려워 담배가 해롭지 않다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적극 담배의 권장을 촉진하는 캠페인을 실시한 적이 있다(담배사업자 담배인삼공사는 홍보책자 5만부를 배포하다가 비난여론이 일자 이를 회수함).

1990년 1월경 발부된 이 홍보책자에 의하면, “흡연과 건강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흡연율과 평균수명에 아무관계가 없다... 현재 국내에서 일고 있는 금연운동은 일부 학자들의 지나친 미국편향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오히려 담배는 스트레스와 정신균형유지, 인간관계에 촉매제 역할, 지방재정의 기여를 통해 사회적 정신의학적 효용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담배사업자 담배인삼공사의 행위는 1989년 담배갑에 부착한 경고문구의 취지와 전혀 반대되는 행동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경고할 진실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된다. 오히려 ‘흡연과 건강사이에 아무관계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대중을 속이는 방법으로 담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배는 스트레스와 정신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호도하면서 담

3)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2003. 5. 담배사업자 KT&G가 보유하고 있는 1958~1999년 담배연구자료 중 흡연의 유해성, 중독성 관련 연구자료 464건이 공개되었고, 연세대환경공해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1960년대부터 담배의 발암성을 알았고 폐암에 걸리는 사실, 니코틴 중독성도 알고 있었으며 담배속의 발암물질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배를 피울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제조물 책임상의 제조자의 과실의 차원이 아닌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사기적 고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담배사업자 대한민국은 구입대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담배를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담배구입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왔는바, 이 또한 국가가 적극적으로 담배를 피우도록 권장하여 흡연자를 만들고, 나아가 평생 중독자가 되게 만든 행위에 해당한다.

또 담배사업자 대한민국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국산담배 장려정책을 펼쳤으며 담배판매에만 급급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로부터 교부받는 담배세에 재정수입을 기대한 나머지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펼쳤는바,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국민에게 '담배가 전혀 해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현혹시키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흡연자가 되어 중독자가 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

**6) 담배사업자들의 의무**

담배는 담배사업자들이 담배를 제조, 판매할 때 의도한 대로 소비자가 그대로 사용할 경우, 흡연자에게 폐암, 심장병, 기관지염 등 각종 암과 질병을 일으킨다. 담배는 의도된 대로 사용될 때 중독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습관성, 의존성이 생기며, 금연을 하거나 담배를 줄이는 것조차 대단히 어렵게 된다.

따라서 담배의 독점제조, 판매권을 가졌던 담

배사업자 대한민국정부와 한국담배인삼공사, 그 후 이를 승계한 담배사업자 KT&G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배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대하여 경고하고, 담배의 위험감소를 위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만약 담배를 제조 판매자가 의도한 대로 계속 사용하면 담배소비자에게 위에서 언급된 해로운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할 의무
- (2) 만약 흡연자가 사용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위에서 언급한 해로운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에 대한 경고와 안전한 소비량에 대한 가이드 라인 설정의무
- (3)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해로운 결과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금연교육과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를 강력히 규제할 의무
- (4) 담배의 니코틴에 강력한 중독성이 있으므로 일단 담배를 시작한 후에는 담배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사실의 경고의무
- (5) 담배의 유해성분과 발암성분, 중독성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담배갑에 설명지 동봉등의 방법)
- (6)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대중에게 널리 홍보할 의무(공익광고나 금연교육 등 실시

- 의무)
- (7)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한 후에는 기존의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 경고를 할 의무
- (8) 담배의 해로움과 중독성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담배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안전한 담배를 고안, 제조, 판매할 의무
- (9)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담배사업자들의 내부 연구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공포하여 알릴 의무
- (10) 장기 흡연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대한 치료비 보조 의무
- (11) 만성 중독증에 걸린 흡연자들이 금연클리닉 등을 통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

**7) 담배사업자들의 소비자보호의무 위반**

- (1) 담배사업자 대한민국은 흡연이 폐암 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자체 연구결과와 1965년 미국의 The Surgeon General의 보고서를 통해서, 또 1976년 WHO의 권고안을 받고 충분히 그 위험을 인지했으면서, 이를 담배소비자와 예상소비자인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1976년 불충분한 경고(건강을 위해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만 하고, 1989년 경고문구(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 개정할 때까지 소비자

- 에게 담배와 관련한 구체적 위험성에 대해 전혀 알린 바 없다.
- (2) 담배사업자 한국담배인삼공사도 1989년 이후 지금까지 10여년간 담배제조 판매업을 하면서 담배갑에 적은 글씨로 경고문구(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를 기재한 이외, 흡연의 구체적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그 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 (3) 담배사업자들은 흡연자가 사용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위에서 언급한 해로운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에 대한 경고를 제대로 한 적이 없으며, 안전한 소비량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한 적이 없다.
- (4) 담배사업자들은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해로운 결과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금연교육과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규제를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청소년 보호법이 발효된 후에도 아주 미약한 정도의 노력밖에 하지 않고 있다.
- (5) 담배사업자들은 담배의 니코틴에 강력한 중독성이 있으므로 일단 담배를 시작한 후에는 담배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한번도 경고한 적이 없다.
- (6) 담배사업자들은 담배의 유해성분과 발암성분, 중독성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



린 적이 없다.

- (7) 담배사업자들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인식한 후에는 기존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 경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 (8) 담배사업자들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리기 위해 대중에게 널리 홍보하는 공익광고나 금연교육을 1989년 이전에 거의 한 적이 없고, 1989년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된 후에도 그 정도는 아주 미약하다.
- (9) 담배사업자들은 담배의 해로움과 중독성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거나 담배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안전한 담배를 고안, 제조,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 (10) 담배사업자들은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담배사업자들의 내부 연구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포한 적이 없다.
- (11) 담배사업자들은 장기흡연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대한 치료비를 보조한 적이 없다.
- (12) 담배사업자들은 만성 중독증에 걸린 흡연자들이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적이 없다.

### 8) 담배사업자의 과실 및 고의불법행위책임

담배사업자들은 유해물의 제조자로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알리

지 않고, 소비자의 신체, 생명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담배사업자들은 흡연피해자에게 그들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실책임이 있다.

담배사업자 담배인삼공사는 1990년 담배가 인체에 해롭지 않고 오히려 효능이 많다고 선전하면서 담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오히려 퍼뜨리고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담배사업자 대한민국정부는 “국산담배애용운동”을 은근히 부추기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 담배 소비량을 늘릴 의도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담배의 판매량을 늘릴 노력만 하면서 국민들을 더 많은 중독자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담배사업자들은 담배의 해로운 물질을 줄이거나 낮추려는 노력보다는 담배제조과정에 여러 화학 첨가물을 가미하여 담배의 맛과 향을 높이고, 담배의 니코틴 흡수율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도록 노력했고, 한번 맛을 들이면 좀처럼 끊기 어려운 중독자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따라서 담배사업자들은 흡연피해에 대한 고의적 은폐 및 고의적 묵비에 의한 정보비제공으로 흡연피해자에 대한 고의책임도 있다.

## 3. 한국의 담배소송에서 쟁점들

### 1) 쟁점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어야 하고, 위법행위와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sup>4)</sup>. 따라서 담배소송에서 흡연피해자인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1) 담배사업자가 흡연의 유해성, 발암성을 어느정도로 언제부터 알았는지, 이를 알고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해온 것인지의 점(담배사업자의 고의, 과실의 점), 2) 원고의 폐암이 흡연으로 인해 유발되었다는 데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담배소송에서 쟁점은 1) 담배사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방법, 2) 원고의 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인과관계의 입증정도 및 입증책임의 분배), 3) 담배갑의 경고문구만으로 담배사업자의 면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4) 니코틴 중독성과 관련하여 담배를 계속 피운 책임을 흡연자에게만 모두 전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 2) 인과관계의 입증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50년간 이루어진

수많은 역학적 연구결과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원고들이 폐암에 걸릴 외부적 환경에 노출된 적이 없고, 담배를 하루 한갑 이상 25년 이상 피운 경우 흡연 이외의 폐암의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흡연이 절대적으로 주된 폐암의 원인임은 역학적 인과관계로 증명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구결과들이 한결같이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의 발생률 또는 사망률의 비교위험도가 6~12배나 높다는 사실과 기여위험도로 보아 폐암의 90%는 흡연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흡연과 폐암발생과의 전후관계, 용량-반응관계, 그리고 다른 분야의 연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담배는 폐암의 원인으로 결론지었다<sup>5)</sup>.

문제는 역학적 인과관계만으로 법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우리 법원이 판단할지에 있다. 일본의 학자들은 역학인과관계에 개연성이론을 결합시켜 원고측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보는 견해,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개연성 이론을 거론할 필요가 없이 법적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고 현재는 후자의 견해가 일반적이다<sup>6)</sup>.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해소송과 제조물책임 소송에 있어서 개연성이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역학인과관계는 개연성 이론을 결합시켜 입증책임을 담배사업자에게 전가하는데 중요한

4) 민법 제750조

5)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미국보건위생총감의 보고서를 비롯한 세계각국의 권위있는 연구보고서들과 미국담배소송에서 증언한 역학자들의 증언내용을 서증으로 제출했고, 역학전문가로서 연세대 김일순 교수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6) 박치룡, “환경소송에서의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103면, 재판자료 90집 (2000. 7). 환경법의 제문제(상), 대법원 법원행정처.

증거자료가 된다.

우리 대법원이 처음으로 개연성 이론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받는 판결은 1984. 6. 12. 선고 81다 558호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해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원칙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엄밀한 과학적 증거를 요구함은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사실상 거부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 보다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수질오탁으로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서 (1) 담배사업자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2) 그 폐수중 일부가 유통

통하여 이 사건 김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3) 그 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이 증명된 이상 담배사업자공장의 폐수배출과 양식 김에 병해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담배사업자가 (1) 담배사업자 공장폐수 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2)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해수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담배사업자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대법원은 개연성설을 그 후 1991. 7.23. 선고 89다카1275호 사건,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 692호 사건 등 여러 공해소송에서 채택하였고 이제는 확고한 입장이 되었다.

한편 제조물책임소송과 의료과오소송 등 불법행위소송에서도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문영역에 속하는 부분인 고의, 과실이나 인과관계의 입증을 일반불법행위와 같은 정도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실상의 추정(res ipsa loquitur)’의 방법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고 있다. 사실상 추정의 원칙을 사용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한 제조물책임소송으로는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 18139호 사건,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 15934등이 있고, 의료과오소송으로는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7701 등이 있다. 이에 의하면 해당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

성, 즉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상당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족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역학적 연구결과와 개연성 이론, 사실상의 추정원칙을 결합하면 충분히 입증이 되므로, 담배사업자가 원고의 폐암이 흡연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 3) 담배사업자의 고의, 과실 위법성 입증

담배사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제조한 담배사업자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발암성, 니코틴의 중독성을 언제부터 어느정도로 알았는지를 입증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937년부터 담배연구소가 있어왔고 현재 “KT&G 중앙연구원”으로 편입되기 이전까지 (재)한국인삼연구소가 담배에 관한 연구를 해왔고 전신기관의 모든 연구결과물을 보관해왔음에도 그 연구결과들은 공개되지 않았고 연구소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다.

담배사업자 (주)KT&G가 보유한 담배연구자료에 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담배소송이 제기된지 무려 5년째 되는 2004년 4월 30일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법원은 1958년부터 2000년까지 이루어진 담배연구문서 및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경영진 결재서류, 총합계 464건의 문건에 대해 담배사업자 KT&G

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발부하였다.

이러한 담배연구문건을 통해 담배사업자가 1960년대부터 담배의 발암성 폐암유발사실, 니코틴 중독성을 알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매년 담배의 발암성분을 분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담배사업자가 담배의 발암성과 중독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전혀 없으므로(1989년부터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부착한 것 이외에는) 담배사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성이 입증된다고 본다.

### 4) 담배갑 경고문구로 인한 면책 여부 및 니코틴 중독성의 문제

담배사업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핵심 요건인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성과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증명한 경우에도, 담배사업자가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게재한 것만으로 흡연피해자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니코틴 중독성과 관련하여 경고후에도 흡연을 계속한 피해자에게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는다.

우리나라에서 담배갑에 경고문구가 최초로 시작된 것은 1976년 1월 1일 이었으며, 최초의 경고문구는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가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경고로 볼 수 없다. 지나친 담배의 의미가 모호하며, 담배는 아무리 소량이라도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중독으로 하루 한 갑 이상이 되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에

하루 한 갑 정도 피우는 것이 '지나친' 담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데 하루 한갑씩 20년 이상 피울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이 90%이상 높아지게 되는 것이므로 1976년의 경고문구는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담배'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고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이는 경고로 볼 수가 없다.

1989년 12월 17일부터 시작된 경고문구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경고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989년 시작된 이러한 경고만으로, 흡연자가 담배를 계속하여 폐암에 걸린 결과를 모두 흡연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담배제조자는 면책된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니다. 미국의 제3단계 담배소송에서, 우리보다 20년 더 일찍 경고가 시작되었고 (1965년에 최초의 경고가 시작되었으나 미국법원에서 1969년부터 강화된 경고를 경고의 시작으로 인정한다), 정부차원에서 흡연의 해로움을 적극 홍보하는 등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흡연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국민들에게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원은 담배 갑의 경고문구만으로 담배회사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전까지는 금연운동을 한 것이

거의 없고 정부 및 (주)KT&G는 지금까지 니코틴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경고를 한 적이 전혀 없다.

경고문구는 원고에게 흡연의 일반적 위험을 주지시키는 것인데 이는 담배회사에 의해서만 알려진 무수한 '구체적 위험' (대중이 알지 못하도록 은폐한 것)과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담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독성, 즉 니코틴이다. 니코틴의 다양한 용량, 화학적 작용은 담배회사에 의해 매우 교묘하게 고의적으로 조종된다. 니코틴의 존재와 조작은 흡연자에게 담배를 끊을지 말지를 선택할 자유를 감소시킨다. 대부분의 흡연자는 10대에 담배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위험을 알아챌 능력이 있기 전에 니코틴에 중독된다. 니코틴에 의존성이 생긴 소비자에게 단순한 담배갑의 경고문구 하나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더구나 담배회사가 흡연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니코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 이미 니코틴 의존성이 생긴 소비자에게는 더욱 혼동을 초래할 뿐이다. 그러므로 흡연자는 이러한 담배의 위험과 중독성을 모두 알면서, 나아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흡연을 선택하였다고 할 수 없다<sup>7)</sup>.

한국의 담배소송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폐암의 경고문구가 1989년에 비로소 시작되었고, 정부차원에서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거나 금연운동을 펼친 것은 1995년 이전까지 전무하며, 오히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담배전매사업과 군인들에게 담배를 무상공급하고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등을 통하여 흡연을 범국가적 범사회적으로 장려해온 분위기였고, 한국담배인삼공사는 1989년 경고문구가 시작된 후 흡연이 유해하지 않다는 거짓 홍보책자를 발간한 행동이 있고, 니코틴 중독성에 대해서는 한번도 진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흡연자들에게 흡연의 유해성과 니코틴 중독성을 피해자가 알면서 감수하였다는 주장은 결코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 4. 앞으로의 전망

현재 진행중인 담배소송은 흡연피해자들인 원고가 1960년대부터 담배를 시작한 사람들로써 1989년 이전까지는 폐암유발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그 후에는 중독성으로 인해 담배를 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1990년 이전에는 담배의 유해성, 중독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가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지 않았고 금연운동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담배피해가 사회문제화 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지한 기간에 30년 상당 흡연을 해오다가 폐암 등에 유발된 피해자들은 담배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데 법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1989년 이후 흡연을 시작한 사람들이나 최근에 담배를 시작한 사람들은 경고의무 강화, 언론보도, 금연운동, 담배소송등을 통해 무수한 흡연피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담배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추궁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7년째 진행되어온 담배소송이 올해 안으로는 1심 판결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에서 흡연 피해자에 대한 담배사업자의 법적책임에 대한 결론이 기대된다. <sup>8)</sup>

7) 흡연피해자개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징벌적 배상 2500만달러와 보상적 배상 150만달러의 판결을 선고한 Henley v. Philip Morris, Inc., et al. 사건에서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도 이러한 이유로 “경고만으로 담배회사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니코틴 의존성으로 담배를 계속 피워 폐암에 걸린 피해자에게 담배회사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sup>8)</sup> Henley v. Philip Morris(No. 995172, California Super., San Francisco Co.)(San Francisco, CA).

1) Henley 사건은 2005. 7. 미국연방대법원에서 징벌적배상 900만달러, 보상적배상 150만달러로 최종 감축되어 확정되었다.